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유동균의원 외 7명	1

(2012. 5. 18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5월 8일

나. 제 출 자 : 유동균 의원 외 7명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2년 5월 11일

나. 의안번호 : 12-31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,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사항 마련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, 다른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회 참석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1. 안 제21조(재정 및 실무지원) 제3항을 신설하여 “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” 라고 규정함.

< 검토의견 >

동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저촉됨이 없으며 해당 기관인 집행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